

기강감사

기강감사 결과 보고서

감사실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근무 중 태도 점검·민원제보·비위 사실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개선사항 발굴·조치, 책임자 문책 등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근무 기강확립을 목적으로 함.

2. 감사 대상 및 범위

- 감사 대상 : 전 부서
- 감사 범위 : 취업규칙 위반행위 등 복무 전반

3. 감사 기간 및 인원

- 감사 기간 : 2026. 1. 1. ~ 2026. 1. 19.
- 감사인 : 감사실 직무감찰팀 팀장 외 2인

[1] [경고] 사항

제 목 : 취업규칙 등 위반

조치부서 : ★본부

관 련 자 : AAA

내 용

1.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직원은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련자 AAA는 근무 시간에 사사로이 시간을 소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관련자 AAA에게 경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2] [경고 2人] 사항

제 목 : 취업규칙 등 위반

조치부서 : ★본부

관 련 자 : BAA, CAA

내 용

1.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직원은 근무 시간 중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시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련자들은 근무 시간 중 부여된 대기시간에 누워 마사지를 받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취침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관련자 BAA, CAA에게 각각 경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3] [주의] 사항

제 목 : 취업규칙 등 위반

조치부서 : ☆본사 ▼실

관 련 자 : DAA

내 용

1.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직원은 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련자 DAA는 업무추진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수차례 환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실장은 관련자 DAA에게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 [강등, 정직] 사항

제 목 : 취업규칙 등 위반

조치부서 : ☆본사 ▽실

관 련 자 : EAA, FAA

내 용

1.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모회사 자산 무단 반출, 직무 교육 대리참석 및 근무 시간 중 사적 용무 수행 등 근무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련자 EAA는 소속 직원에 대한 폭언 및 인격 비하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지속하고, 업무 전가 및 사적 지시, 자산 무단 반출 용인, 근태 미준수 등 관리자로서 의무를 저버렸다.

관련자 FAA는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 수행 등 근무 태만을 반복하고, 모회사 자산을 무단반출하며 직무교육을 대리 수강하였다.

조치할 사항

▽실장은 관련자 EAA에게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강등)

▽실장은 관련자 FAA에게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정직)

[5] [견책] 사항

제 목 : 취업규칙 등 위반

조치부서 : ☆본사 ▽실

관 련 자 : GAA

내 용

1.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직원은 근무 시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하거나 근무시간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근무 전·중 음주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교대근무의 특성상 근무 인수인계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련자 GAA는 총 3회에 걸쳐 근무 시간 대비 지각을 하였으며, 이 중 2회는 음주 상태로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과거 동일 사안으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행위가 반복 발생하여 복무 기강 해이 및 개선 의지가 부족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실장은 관련자 GAA에게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견책)